

제정 2021.04.21.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동명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재학생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미래 청년 벤처 기업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3조 (구성)

본교 창업동아리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구성할 수 있다.

가. 창업동아리는 동명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단 사업단장의 승인하에 이미 창업한 학생도 선발 대상이 된다.

나. 창업동아리 회원은 지도교수 1인 이상과 학생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학생은 사업단의 지원을 받는 타 창업동아리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다. 회원의 자격은 졸업과 동시에 상실한다.

제4조 (신청)

가. 창업동아리로서 등록(신규·재등록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구비서류를 SW산학융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별지 [제1호 서식] 창업동아리 참가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나. 창업동아리의 신청접수는 상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승인) 창업동아리의 승인은 매 분기(1월, 4월, 7월, 10월) 둘째 주에 SW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제6조 (동아리 지원 범위)

가. 사업단은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활동운영비를 지원한다.

나. 활동운영비의 한도는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정)으로 한다.

다. 추가적인 활동운영비가 필요시 사업단장의 승인 후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활동운영비는 기자재구입비, 출장비, 인쇄유인물비, 전문가활용비,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소프트웨어개발자등록비, 통신판매업등록면허세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서명을 득한 후 지원한다.

- 1) 시제품 제작 시 시제품에 대한 시제품제작계획서, 시방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작 전 SW산학융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2)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시 전문가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활용비는 활동운영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3) 기자재구입비는 본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 4) 모든 구매행위 이전에 재료구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지도교수의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하다.
- 5)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집행하지 않으며, 기집행된 것은 환수 조치한다.
- 6) 소프트웨어개발자등록비 및 통신판매업등록면허세는 간접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나 소속 학생이 관련 업무로 출장 시 여비는 본교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마. 활동운영비는 창업동아리 집행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활동 및 결과 보고)

가. 창업동아리는 승인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해야 한다.

나.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창업캠프 등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지도교수 및 참여 인원, 팀명, 창업 아이템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창업동아리 변경신청서를 SW 산학융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SW산학융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창업동아리 활동보고는 매 분기(1월, 4월, 7월, 10월) 첫째 주 금요일에 창업동아리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사업단에 제출한다.
- 2) 각종 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 시 참가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시 참가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3) 창업동아리 활동을 중단하는 학생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창업동아리 종료 시 창업동아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8조 (장학금 및 마일리지)

가.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수상금은 해당 창업동아리에 귀속한다.

나. 창업동아리 참여시 구성원 1인당 분기별로 활동보고서 제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에게 사업단 마일리지 5점을 지급한다.

제9조 (변경통보의무)

창업동아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산학융합센터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창업동아리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주요한 창업동아리 운영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등록의 취소)

등록한 창업동아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 또는 불허할 수 있다.

가.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나. 학칙 또는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

- 다. 동아리 활동내용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 라. 활동실적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마. 기타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기자재 귀속)

창업동아리 운영비로 구입된 모든 기자재는 창업동아리 해산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